

의안번호	2215623
의 퇴 인	남인순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 계 번호	26C734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29억 3,800만원(연평균 25억 8,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수급자에 대한 교육 (안 제22조의2)	2,405	2,493	2,584	2,679	2,777	12,938	2,5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2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및 인력 수급추계(개정) 5.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신설) 6.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3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에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요전망의 <u>100분의 30 이상을 공공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u>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제3항) ○ 제2항에 따른 공공 장기요양기관 공급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3	안 제6조의4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제2항) 1.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장기요양기관 간의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3에 따른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에 따른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회의와 제54조의3에 따른 관할 지역사례관리회의 의견을 들어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5항) 1. 복합적인 장기요양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2.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4.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수급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가족과 동거하는 수급자	재량규정
5	안 제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교육)	○ 공단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른 갱신 신청으로 제17조제1항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항) ○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의 대리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의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6	안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상 2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 - (현행) 16인 이상 22인 이하 - (개정) 18인 이상 24인 이하	의무규정
7	안 제54조의2 (사례관리회의 등)	○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 사례관리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조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수립, 공단과 장기요양기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제2항) ○ 사례관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제3항) ○ 사례관리회의의 위원장은 제5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4항) ○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제5항) 1. 시민단체 또는 노인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 3.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 4.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 ○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한다.(제6항)	
8	안 제54조의3 (지역사례관리회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장기요양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사례관리회의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1항) ○ 지역사례관리회의는 그 관할 구역의 노인단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및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제2항) ○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위원 수는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행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 ○ 지역사례관리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5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의2 (실태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8억 2,000만원을 배정하여 수행하였으며, 현 시점에 항목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여부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2	안 제6조의3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여부(또는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공공으로 전환), 추가 설치 지역과 요양기관의 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규모, 설치 시기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 현 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3	안 제6조의4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23~'27)을 통해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4	안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 미대상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업무에 사례관리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할 경우 업무량은 증가할 수 있으나,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교육)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6	안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 미대상 - 기관 자체 경비로 충당 가능
7	안 제54조의2 (사례관리회의 등)		
8	안 제54조의3 (지역사례관리회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지역사례관리회의의 운영은 해당 지자체의 규모, 사례 유형,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 향후 사업의 내용, 범위, 방법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급자에 대한 교육, 사례관리회의 등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의 증가분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¹⁾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지출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²⁾,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³⁾⁴⁾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수급자에 대한 교육(안 제22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지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급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에 따른 ①교육 자료 제작 비용과 ②교육 시행을 위한 인건비의 합으로 추계
- (교육 자료 제작비) 당해연도 최초 및 갱신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여이용책자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제작비에 기존 급여이용책자 제작비용 차감
 - (대상자 수) 통계청 장애인구추계(2024.12.)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대비 생애최초 상담자와 갱신신청상담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
 -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생애최초 상담자와 2024년 갱신신청 대상자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자료 단가)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이용책자 제작단가인 680원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존 교육자료 제작비)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용책자 예산 8,600만원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교육 인건비) 장기요양운영센터 1개소 당 교육업무 신설에 따른 담당자 1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항목은 공단과 환자본인부담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은 국가재정이 아님.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증가할 경우 국가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3)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인을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채용 인원) 전국의 장기요양운영센터 227개소⁵⁾에 공단 직원 1인씩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단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라 6급 1호봉 연봉 4,316,600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기관부담 요율⁶⁾을 적용하고,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2027~2031년) 총 646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교육 자료 제작비 및 인건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교육 자료 제작비(개정) ($A=a \times b$)	442	471	496	525	553	2,487
교육대상자 수(a)	625,029	653,501	674,843	699,575	723,151	-
교육자료 단가(b)	707	721	735	750	765	-
기존 교육 자료 제작비(B)	88	89	91	93	95	456
추가 교육 자료 제작비 ($C=A-B$)	354	382	405	432	458	2,030
교육 인건비(D)	11,669	12,084	12,516	12,963	13,427	62,659
합 계(C+D)	12,023	12,466	12,921	13,395	13,885	64,689

주: 1. 2025년은 실적치, 2026년 이후는 전망치

2. 교육 인건비는 기관부담금을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나. 수급자에 대한 교육(안 제22조의2)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총괄적 전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 추가지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임
-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2027~2031년) 총 129억 3,800만원으로 추계됨

5) 174개 지사, 53개 출장소

6)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표 2] 개정안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2,405	2,493	2,584	2,679	2,777	12,938	2,5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산출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본 추계서를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